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123533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3. 8.

판 결 선 고 2022. 5. 17.

##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1,797,688원 및 그 중 11,601,878원에 대하여 2021.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0.5/25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7. 5. 3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9.15/918.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7. 5. 3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는 2015. 2. 27. 피고 B에게 1,400만 원을 대출기간만료일 2018. 2. 15., 이자율 연 26.4%, 지연배상금율 연 34.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였고, D은 2019. 3. 21.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채권양도통지 사무를 위임받아 2019. 4. 15.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2021. 2. 19. 기준으로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내역은 원금 11,601,878원, 인수전 이자 13,458,014원, 인수후 이자 6,737,796원 합계 31,797,688원이고, 연체이율은 29.4%이다.

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281분의 20.25 지분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102.1분의 4.575 지분은 피고들의 어머니인 E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었는데, E이 2016. 11. 2.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배우자인 F(법정상속분 3/9) 및 자녀들인 피고들과 G(법정상속분 각 2/9)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위 상속인들은 2017. 5. 31.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281분의 20.25 지분과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02.1분의 4.575 지분에 관하여 이를 전부 피고 C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6. 5.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31,797,688원 및 그 중 대여원금 11,601,87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1.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9.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2017. 5. 31.) D에 대한 대여금 채무 11,601,878원 외에도 I은행에 4,062,000원, I카드에 1,122,000원, J에 31,193,000원, K에 13,394,000원, L에 19,188,000원, M에 2,821,000원, N에 2,694,000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7,605,000원과 12,340,000원, 국세청(관악세무서)에 3,004,000원 등 합계 약 109,024,878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망인의 지분 중 자신의 상속지분(2/9)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C에게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선의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C이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사행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제1부동산의 281분의 20.25 중 피고 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인 40.5/252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의 102.1분의 4.575 중 피고 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인 9.15/918.9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한편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40.5/252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9.15/918.9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모

별지